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조례·규칙·고시 등 관계 법령과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과원이 운영하는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이하 “랩 스테이션”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이란 바이오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실험공간, 연구장비, 사업화, 투자·글로벌 진출 및 네트워킹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생식·증식·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연구·생산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관련 산업”이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른 바이오산업 분류상의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자원산업, 바이오서비스산업 등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관리, 참여자 선정 및 지원 등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과원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랩 스테이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연구·실험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공동실험실”이란 참여자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개별 실험테이블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구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8. “사무공간”이란 참여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개별 또는 공동 사무공간을 말한다.
9. “라운지”란 참여자 등이 회의, 휴게 및 교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10. “운영위원회”란 랩 스테이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참여자의 제재·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참여자의 선정,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등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신청자”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기술 또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서 모집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3. “선정자”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4. “참여자”란 선정자 중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랩 스테이션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5. “예비선정자”란 선정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선정목표인원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자 중 결원 발생 등에 따라 참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6. “지원사업”이란 랩 스테이션 참여자의 성공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간, 연구개발, 연구장비 활용, 교육·세미나, 사업화·마케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네트워킹, 경영·법률·세무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17. “실태조사”란 참여자의 경영 및 연구개발 현황,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랩 스테이션의 지원대상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기술 또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으로 한다.
② 창업기업의 업력, 소재지, 지원범위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지원요건은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바이오산업의 특성, 기술성,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전담기관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공간, 공동실험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의 지원
2. 연구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지원
3.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4.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5. 투자유치 및 투자역량 강화 지원
6. 국내외 전시회·컨퍼런스 및 글로벌 진출 지원
7.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8. 경영·법률·세무·특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담기관이 랩 스테이션 참여자의 모집·선정, 협약체결, 공간지원, 지원프로그램 운영,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과원의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③ 사업의 성격상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관리기관)

경기도는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2. 사업의 총괄적인 지도·감독
3. 전담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4.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기관)

경과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참여자 모집·선정 및 협약체결
3. 랩 스테이션 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4. 참여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5.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
6. 참여자의 사업수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
7.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8.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정산
9. 참여자의 사후관리 및 성과조사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담기관은 랩 스테이션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바이오산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원은 바이오산업, 창업·투자, 기술사업화, 경영·회계·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안건의 성격과 심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⑩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랩 스테이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참여자의 사업 중단 및 지원종료에 관한 사항
3. 참여자의 제재 및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
4. 참여자의 이의신청 및 소명에 관한 사항
5.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촉 사유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안건을 배부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기피 신청은 심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일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외부위원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참여자의 제재 및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
2. 참여자의 사업 중단 및 지원종료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일정 등으로 대면 회의를 열기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2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기한과 회신방법을 정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의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록)
전담기관은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 안건, 심의 결과 및 주요 의견 등을 적은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보존, 심의자료 관리, 공동활용 실적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심의 결과의 효력·통보 및 이의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을 구속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 및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청렴 및 비밀유지)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청렴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참여자의 의무)

① 참여자는 사업의 목적 및 협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행
2.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등 사업 관련 자료 제출
3. 사업성과 및 관련 자료의 제출·활용에 대한 협조
4.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지원프로그램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5.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장 이전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이행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폐기물 적정 처리 기준의 준수
7.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이행

③ 참여자는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내용 또는 시설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업 추진절차

제19조(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모집공고 3. 신청·접수 4. 적격확인 5. 선정평가 6. 법위반 사실 등 확인 7. 최종선정 8. 협약체결 9. 공간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10. 사업점검 및 완료평가 11.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② 사업의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은 사업계획 또는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모집 및 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경기도 기업지원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집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이오 분야의 기술 또는 사업아이템을 보유할 것
2. 모집공고에서 정한 업력 및 기업요건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6. 전담기관의 다른 창업공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제외 기준은 모집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랩 스테이션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종류, 서식,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의 확인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 또는 지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신청 이후 기업정보,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선정

제24조(선정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1. 신청·접수 2. 적격확인 3. 선정평가 4. 법위반 사실 등 확인 5. 최종선정

②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및 가·감점 기준은 모집공고 또는 별도의 선정평가계획에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적격확인) ① 전담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적격확인 결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바이오산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선정평가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수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최종점수의 산정방법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선정평가계획에서 정한다.

⑤ 선정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⑥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평가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⑦ 경기도 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⑧ 법위반기업에 대한 감점 등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해당 연도 경기도 고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7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구성한다.
1. 바이오산업, 기술,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창업·투자,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사업화 및 투자유치 전문가
3.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전담기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평가 개시 전에 청렴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을 받아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이 참여한 평가는 무효로 하고, 위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예비선정자)

①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인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예비선정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선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순위에 따라 참여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선정자의 협약 미체결 2. 선정자의 참여 포기 3. 참여자의 중도 이탈
4. 선정인원의 확대 5. 그 밖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③ 예비선정자의 유효기간 및 전환방법 등은 모집공고에서 정한다.

제5장 공간지원

제29조(공간지원)

①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사업목적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실험실, 개별 실험테이블,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공동실험실, 공용장비, 회의실, 세미나실 및 그 밖의 공용시설을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간별 이용기준 및 운영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참여자는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전담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실험실 및 연구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공용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예약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③ 장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은 전담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일부 부과될 수 있다.

④ 참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장비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1조(입주기간)

① 랩 스테이션의 입주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며, 평가결과 및 사업수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입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기간 및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또는 시설사용계약에서 정한다.

③ 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기간이 종료된 참여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시설의 원상회복 및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참여자가 입주기간 중 공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평가)
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연장평가계획에서 정한 전담기관의 신청기한 내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연장 신청한 기업의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바이오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연장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연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지난 입주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특허, 시제품, 투자유치, 매출, 고용 등)
2.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인프라 및 장비 활용 실적
3. 남은 입주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일스톤 및 실현 가능성
4. 랩 스테이션 운영 규정, 안전관리 수칙 및 시설유지 의무 준수 여부
④ 연장평가 결과 연장평가계획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연장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장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간 연장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거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

제33조(협약의 체결)

①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는 사업기간, 지원내용, 참여자의 의무, 성과관리, 협약변경, 협약해지, 제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예비선정자가 참여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및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정자가 협약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2. 정해진 기간 내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선정 이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선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예비선정자를 참여자로 전환할 수 있다.

제34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협약변경 신청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은 사업목적 및 당초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변경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 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조건 또는 사업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협약변경 신청기한 및 세부절차는 사업계획 또는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35조(협약의 해제·해지 및 지원종료)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3. 협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휴업·폐업·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중복수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
6. 중간점검 또는 완료평가 결과 사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지원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참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제·해지 및 지원종료에 따른 제재 및 환수는 제48조에 따른다.

④ 참여자의 자진 포기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지원종료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장 시설관리

제36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참여자는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철거, 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참여자가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참여자가 부담한다.

제37조(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① 참여자는 랩 스테이션 내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질, 폭발성 물질, 감염성 물질 등을 반입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은 적법한 연구용 시약 및 균주 등은 예외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은 전담기관의 환경안전 지침 및 관련 환경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사용료 등)

① 랩 스테이션의 시설사용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항목 및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은 별도의 시설사용기준 또는 시설사용계약에서 정한다.

④ 참여자가 시설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납부를 독촉하고, 장기 연체 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경과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거)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시설을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인화성·폭발성 물질 등 시설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6. 시설 내 질서 또는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7. 다른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시설사용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9. 협약 또는 시설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퇴거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정요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퇴거가 결정된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가 퇴거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참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0조(시설사용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시설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협약 또는 시설사용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3. 참여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4. 사업 종료 또는 시설의 폐쇄 등으로 시설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사용을 종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종료 시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8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제41조(지원프로그램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의 수요와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연구장비 활용,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컨설팅, 교육, 세미나, 워크숍,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규모는 예산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2조(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① 참여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경과원의 다른 창업공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랩 스테이션의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제9장 점검 및 평가

제43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중 참여자의 사업수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진행상황, 지원시설 이용현황 및 협약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중간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은 참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중단, 지원종료, 참여제한, 지원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수행 현황 및 시설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은 전담기관의 담당자 2명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참여자는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현장 안내 등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재점검,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완료평가)

① 전담기관은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참여자에 대하여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완료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사업계획 및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수행 실적
3. 사업화 및 투자유치 실적
4. 지식재산권,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
5. 협약사항 및 시설이용 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④ 완료평가 결과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완료평가 결과 실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 과정의 성실성, 실패 원인, 참여자의 귀책 여부 및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및 환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의 특수성(인허가 소요 기간, 임상 일정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 목표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완료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에 따른다.

제10장 지원종료 및 사후관리

제46조(조기 지원종료)

①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에 조기 지원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기술개발 또는 인허가 등 사업계획상의 주요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경영상 또는 기술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조기 지원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기 지원종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조기 지원종료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조기 지원종료 신청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조기 지원종료가 승인된 경우에도 참여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보고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지원종료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 운영현황 조사
2. 매출 및 고용현황 조사
3. 투자유치 및 기업가치 관련 현황 조사
4.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 조사
5. 지원사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6. 기업 간담회 및 네트워킹
7. 교육 및 후속지원
8. 그 밖에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참여자는 협약 종료 후에도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성과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사후관리 결과를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장 제재 및 환수

제48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제재 또는 지원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
6. 협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7. 제출한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완료평가 결과 사업수행 실패로 판정된 경우
9. 지원자격이 사후에 부적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0.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경과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 및 환수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고의 또는 과실 여부
3.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수행 및 지원금에 미친 영향
4.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
5.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 여부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여부
7. 그 밖에 제재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재 또는 환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경과원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재 및 환수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 제재 및 환수기준에 따른다.
⑥ 관계 법령, 경기도 조례 또는 고시 등에서 지원제한 또는 제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⑦ 전담기관은 환수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확보 및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행정사항

제49조(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참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 및 선정
2.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3. 지원사업 운영
4. 법위반 사실 확인
5. 중복지원 여부 확인
6. 사업성과 및 만족도 조사
7. 사후관리
8.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조회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처리·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경과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적인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민원 및 이의신청)

① 참여자는 선정, 평가, 지원, 제재 및 환수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집공고 또는 별도의 절차에서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재 및 환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경기도 조례·규칙·고시, 경과원의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계획, 평가계획, 시설사용기준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26. 10.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구성·위촉된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구성·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지침 시행 당시 랩 스테이션에 입주 중인 참여자의 입주기간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 및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호 서식]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구분	목록	제출여부
1	**[붙임1]**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신청서류 제출 점검표	Y/N
2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붙임3]**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4	**[붙임4]**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5	**[붙임5]** 프로그램 수요조사서	
6	**[필수_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예비창업자)	
7	**[필수_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8	**[필수_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간) 국세청 발급	
9	**[필수_사업자]**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필수_사업자]** 기업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6)**	
11	**[필수_사업자]**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붙임7)**	
12	**[해당 시]** 기업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신청서**(붙임8)**	
13	**[해당 시]** 투자유치 확인 서류(투자계약서)	
14	**[해당 시]**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	
15	**[해당 시]** 기업인증(여성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경기도 기업이전 증빙(가산점)	

제출일 : 20__. . .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개인 및 기업 식별,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운영 및 기업관리, 사후관리, 중소기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이력 등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 기업식별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접·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조직현황, 영업 및 재무현황(매출 및 수출 등), 지적재산권 현황

◇ **보유·이용기간**(사업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기업정보,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경기도청,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교육 및 컨설팅 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개인 및 사업식별, 평가 선정, 중복지원검토 등 지원사업 운영 관련 자료 활용 및 기타 사업 운영 목적

◇ **제공할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5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후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기업정보, 개인식별정보, 기업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2호 서식]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 여 신 청 서

대상과제	구분	□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업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예비창업자(홍길동)		
	과제명	개발하고자하는 아이디어(아이템)를 명료하게 나타내도록 명명		
	과제분야 (택1)	□ 제약(바이오, 세포치료, 첨단의약품 등) □ 의료기기(진단, 치료, 융합) □ 식품, 화장품 (기능성 제품/서비스 등) □ 의료서비스(AI, 빅데이터) □ 기타 바이오산업 분야		
	사업장 소재지	도 ( )시・군	입주공간 사용용도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예상입주일자 (입주희망기간)	20__년 월 일	입주종업원수 (상주인력)	
창업현황	설립형태	□ 개인 □ 법인	창업일	개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재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기본정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성별	남 / 여
	사업장 주소	예비창업자의 경우 자택 주소 기재 요망		
	E-mail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3호 서식]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세부항목
□ 일반 현황	- 기본정보 : 대표자, 과제명 등 일반현황 및 제품(서비스) 개요 - 세부정보 : 신청분야, 기술분야 신청자 세부정보 기재
□ 과제 개요	- 창업과제 소개, 차별성, 개발경과, 국내외 목표시장, 창업과제 이미지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일정	- 창업과제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을 기재
□ 자금확보 및 운영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확보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

1. 문제인식 (Problem)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 / 개발 및 추진경과(이력) / 개선 목적** -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내·외적 동기 등 -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사업 신청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 등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목적 등
	1-3.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고객 특성 등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 협약기간 내 개발/개선할 제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 정의 -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법,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 단계, 진행(준비)정도 등 -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계획 등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 보유역량 기반,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3. 성장전략 (Scale-up)	**3-1. 창업과제의 성장전략** -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비즈니스 모델) 등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방안 등
	3-2. 사업 추진 일정 - 전체 사업 단계에서의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협약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 일정 등 - 사업참여자의 사업수행의지 (본사업을 통해 경과원 협력 및 지원요청 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국내외 성장 및 지속가능성)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확보 및 운영 계획 -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및 활성화 계획 등
4. 팀 구성 (Team)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과제 구현 및 판매 관련 역량 등 - 보유 지식재산 현황 및 기술개발 수행 경험 등
	4-2. 팀 현황 및 업무파트너 현황 등 - 팀 및 팀 구성 예정(안)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창업과제 관련 역량 등 *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역량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업무파트너(협력기업)의 현황 및 역량 등

『20_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 업 계 획 서**	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　　)

※ 본문 2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 일반현황

과제명	참여신청서 상 과제명과 일치하게 작성						
산출물 (협약기간 내 목표)	※ **협약기간 내(2_년 _월 – 2_년 _월)까지** 최종 제작·개발 완료할 최종 생산품, 성과물의 의 형태, 수량 등 기재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성별**	남 / 여		
기술분야	대표 기술 등	**창업유무**	예비창업자 / 기창업(몇년)				
기업명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시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__. 00. 00	**사업자 구분**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업 현황	**기업자본금** **(2_년현재)**	00백만원	**주요성과** **(최근 3년)**	**고용** **(명)**	00년 0명 (대표자 제외)	00년 *※ 신청일 기준 고용인원*	00년
				매출 **(백만원)**	00백만원	*※ 총 매출*	
				투자 **(백만원)**	00백만원	*※ 투자유치*	

팀 구성 (신청자 제외)

순번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구성 상태
1	공동대표	○○○	기술개발 총괄	○○○○과 교수	공동대표
2	대리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예정('00.0.)
…					
…					
…					

□ 과제 개요(요약)

<table>
<tr><td>과제명</td><td colspan="2">※ 개발하고자하는 아이디어(아이템)를 명료하게 나타내도록 명명</td></tr>
<tr><td>과제소개 및
목표</td><td colspan="2">※ 본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을 사용</td></tr>
<tr><td>진출
목표시장</td><td colspan="2">※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td></tr>
<tr><td>경쟁사 대비
차별성
(보유 기술)</td><td colspan="2">※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예비)창업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특허) 등</td></tr>
<tr><td>산출물 및
개발단계</td><td colspan="2">※ 협약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개발단계 등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핵심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등</td></tr>
<tr><td rowspan="2">이미지</td><td>※ 창업과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td><td>※ 창업과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td></tr>
<tr><td><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td><td><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td></tr>
</table>

1. 문제인식 (Problem)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개발 및 추진 경과(이력)/개선목적

※ ①외적 동기(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②내적 동기(대표자 및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기재
※ 제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본 사업에 신청하기 전 기획, 추진한 경과(이력)에 대해 기재
※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기회에 대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방안, 개발/개선의 필요성, 고객들에게 제공할 혜택 등의 관점에서 개발/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재

○

-

-

○

-

1-2.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및 특성,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기재

○

-

-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 협약기간 내 개발할 제품·서비스의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개발 방법(대표자 직접 개발, 인력 채용, 외주용역), 현재 시점(본 사업 신청 시점)의 개발단계 및 진행(준비) 정도 등 기재
※ 제품·서비스 개발 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계획(보안규정 및 관리체계 등) 기재
* 기술 보호(보안) 관리 체계(보안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및 규정 제정, 보안시스템 운영 등)

○

-

-

○

-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 경쟁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

-

○

-

3. 성장전략 (Scale-up)

3-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

3-1-1. 창업과제의 사업화 방안(비즈니스 모델)

※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중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기재

○

-

3-1-2. 목표시장 진출 방안 및 진입 현황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기재
※ 현재 진입한 목표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출시,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현황과 매출 실적(표) 등 기재
※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용자) 확보 및 다운로드 수 등 기재

○

-

< 매출 실적 > *(창업과제 관련 매출이 있다면)*

순번	목표시장(고객)	제품(서비스)	진입 시기(기간)	판매(이용)량	가격	판매 금액
1	OO업체	OOO	00년 상반기	OO	00백만원	00백만원
2	OO업체(A국가)	OOO	00.00 ~ 00.00	OO	00백만원	00백만원
3	OO앱 스토어	OOO	00년 하반기	00회	-	(무료 다운로드)
4	OO 사이트	OOO	00.00 ~ 00.00	00명	-	(무료 회원가입)
…						

3-2. 사업 추진 일정

3-2-1.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 등 기재

○

-

-

< 사업 추진 일정 >*(전체 사업단계)*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시제품 개발	00년 상반기	시제품 제작 및 유효성/안전성 검증
2	시제품 최적화	00.00 ~ 00.00	의약화학 등
3	비임상 시험	00년 하반기	CRO 계약
4	자금유치 펀딩	00.00 ~ 00.00	
5	임상 시험	00.00 ~ 00.00	IRB 승인
6	기술이전 실시	00.00 ~ 00.00	

3-2-2. 협약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20__.00 ~ 20__.00)

※ 제품·서비스(시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약기간 내 추진하려는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상세 추진 일정 등

○ 달성 목표

- 1차년도(2_.00~2_.00)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달성 목표
1	*균주개발*	*00.00 ~ 00.00*	
2	*생산세포주최적화*	*00.00 ~ 00.00*	
3		*00.00 ~ 00.00*	
4		협약기간 말	
…			

- 2차년도(2_.00~2_.00)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달성 목표
1	*균주개발*	*00.00 ~ 00.00*	
2	*생산세포주최적화*	*00.00 ~ 00.00*	
3		*00.00 ~ 00.00*	
4		협약기간 말	
…			

3-2-3. 사업 수행의지

※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지원받고자하는 다음 각 항목별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연구자원(시설, 장비 인프라, 연구자원 등) 활용 및 협력방안

나. 지역내 산학연 협력 연구 및 네트워크 지원

다. 기타 요청 및 협력사항

※ 선택형 프로그램 선택 및 지원 받고자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2-4.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인지와 기술개발 후 국내외 시장진출에 따른 지속가능 및 추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성장성 및 지속가능성

-

-

○ 기대효과

- 사회적
- 경제적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운영계획

○ 자금확보 방안 및 활성화 계획*(투자유치 및 정부 성장 지원프로그램(ex TIPS 등) 계획)*

-
-
-
-
-

4. 팀 구성 (Team)

※ 평가상 불필요한 대표자·팀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
[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4-1. 대표자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역량 : 창업과제를 구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
* 유사 사업화 경험,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대표자 및 주요인력 역량

-
-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

○ 기술개발 수행 역량

- *(정부과제 수주 및 수행 경험)*
- *(제품 개발 경험)*

4-2. 팀 현황

※ 팀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현재 시점에서 채용 완료했거나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추가 인력 고용계획은 협약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인력 채용 예정이 없는 1인 (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 팀 현황 및 고용계획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00* 명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00* 명

순번	직위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1	공동대표	S/W 개발 총괄	OO학과 교수 재직(00년)
2	대리	홍보 및 마케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3	채용예정 (00.00.)	해외 영업	OO학과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 예정인 업무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협력사항 등 기재

순번	파트너명	보유역량	협력사항	협력 시기
1	○○전자	시제품 관련 H/W 제작·개발	테스트 장비 지원	00.00
2	○○기업	S/W 제작·개발	웹사이트 제작 용역	00.00
…				

5. 기타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수행 현황

※ 타 지자체, 타 기관 창업지원 사업으로 입주공간을 지원받았을 경우 구분란에 '공간' 표기

순번	지원기관명	과제명	금액(원)	지원기간	구분
1	창업진흥원	창업보육공간 지원사업	-	2_.00.00~2_.00.00	공간
2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00,000,000	2_.00.00~2_.00.00	
…					

[제4호 서식]

프로그램 수요조사

*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선정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수요표시
* 지원프로그램은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

NO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수요
1	장비활용 및 시험분석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 연구장비 활용 지원	□
2	비임상 실험(세포/동물)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 비임상 시험 및 기술지원	□
3	임상 프로토콜 개발 지원	◦ 임상 CRO 연계, 임상 프로토콜 개발 단계별 지원	□
4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기술전문가/임상의)	◦ 기술개발 전문가 및 병원내 전문가 멘토링 지원	□
5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등록료, 임차 부스 등 지원	□
6	IR 자료 제작 지원	◦ 투자유치 참여 및 IR 자료 제작 지원	□
7	홍보영상 제작 지원	◦ 기업 및 기술(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
8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	□
9	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사업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10	특허 및 인허가 지원	◦ 특허 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및 등록료 지원	□
11	해외 진출 지원프로그램	◦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바이오산업본부내 프로그램 참여	□
12	경영지원	◦ 기업 세무, 회계, 법률 등 운영지원	□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세부 프로그램 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1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 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2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음	위반사실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5-3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원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선정 평가시 법위반처분사실에 대한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6-1호 서식]

청렴서약서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 참여에 있어, 사업계획과 관련 사무편람 등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정보(아이디어) 또는 기밀 사항 등 일체에 대해 외부 누설 및 탈취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사업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_년 월 일

기업명 :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6-2호 서식]

창업 및 유지동의 확약서

본인은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협약기간 중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 및 유지하며, 기업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창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함.

[제7호 서식]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 업 참 여 협 약 서

■ 참여자(대표자)
- 성명(생년월일) :
- 기업명 :

■ 과제명 : (사업제안서 명)

■ 협약기간 : **20__년 월 일 ~ 20__년 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라 한다)과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이하"참여자"라 한다)는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경과원과 참여자는 상호 간의 공동 협력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성공창업과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랩 스테이션의 사용)

① 경과원은 참여자에게 협약 기간 동안 아래의 **랩 스테이션** 운영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이를 사용한다. ※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 7층, 8층(랩 스테이션)

② 경과원의 사정에 따라 ①항의 공동창업실이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는 사업장 이전에 협조한다.

③ 참여자는 반드시 협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해야 한다. (단, 경과원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참여자는 제공된 **랩 스테이션** 공간의 퇴거 시 사용한 집기 및 장비를 경과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 무단배치 이동 시 배상 및 원상 복구한다.

⑤ 경과원은 참여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정기적으로 경과원이 정한 기일에 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제3조(참여자의 의무)

① 참여자는 제출 사업계획서 따라 성실히 창업과 기업의 사업 발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협약 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예비 창업자인 참여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 경기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참여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협약의 해약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원은 참여자에 대한 제재와 프로그램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참여자는 선택형 지원프로그램 및 경과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네트워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제4조(사업 수행 완료 및 자료제출 등)

① 참여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참여자는 사업의 중간보고 및 점검에 있어 경과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는 사업의 최종평가 및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성과 작성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경과원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⑤ 참여자는 경과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① 참여자의 협약사항(사업과제) 변경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과원은 산업동향 변화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협약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한다.(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

② 경과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참여자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협약 후 타 사업 참여를 위하여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사업기간 중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③ 경과원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경과원과 참여자는 협의 하에 결정하고,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자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경과원과 참여자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성공기부금 출연)

① 참여자는 창업 및 사업성공 후 상당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경과원의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성공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경과원과 참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무편람,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경과원과 참여자는

변경된 법령과 사무편람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수원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참여자는 경과원의 서면동의 없이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124-82-08755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자명 : 0 0 0 (직인)

업 체 명 :
사업자주소(자택주소)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참여자명 : (인)

붙임 : 랩 스테이션 사용 협약

[붙임] 랩 스테이션 협약서

랩 스테이션 사용 협약서

<table>
<tr><td>소재지</td><td colspan="4">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7층</td></tr>
<tr><td>구분</td><td colspan="4">□ 면적 :　　□ 구분 : 00-00 호</td></tr>
<tr><td rowspan="5">사용기업
현황</td><td>기 업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민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주생산품</td><td></td></tr>
<tr><td>E-MAIL
(대표자)</td><td></td><td>E-MAIL
(실무자)</td><td></td></tr>
<tr><td>입주기간</td><td colspan="2">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d>입주일</td><td></td></tr>
<tr><td>사용료</td><td colspan="4">금: 0000000원/월 정기납입일 : 매월 1일(선납)
입금계좌 : 농협 000-00-000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용료는 입주월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정산시 일할 적용하지 않음</td></tr>
</table>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지침과 절차에 따라 입주기간동안 소정의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고 미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사용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중

[제8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추진 중간보고서

기본 정보

※ 협약기간 : '2_.00.00 ~ '2_.00.00

참여자명			**기업명**		
창업여부	□ 여	□ 부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과제명					
사업 추진단계 (중복 가능, ☑ 표시)	□ 시제품 설계단계 □ 시제품 제작단계 □ 시제품 보완단계 □ 자금확보 및 마케팅활동 □ 기타( )				
주요 성과 (협약시작일~ '2_.00.00 기준)	**매출액**	원	**신규고용**	명	
	지재권	출원 0건 등록 0건	**투자액**	건, 원	
			자금조달	건, 원	

상세 정보

목표 대비 실적 요약

〈삭제 후 제출〉
1. 사업계획의 주요 목표를 작성하고, 현 시점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에 대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3.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사업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메인디자인 완성*	*40%*
2			
⋮	⋮	⋮	⋮

○ -

<table>
<tr><td>세부
추진실적</td><td colspan="2">〈삭제 후 제출〉
1. 협약시작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경과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서비스)제작 진척 현황 및 사업화를 위한 주요 활동(마케팅, 지재권, 신규채용 등)에 대하여 기재

□ 사업추진 현황
○
-</td></tr>
<tr><td>시제품
사진</td><td>시제품·서비스 사진 ①</td><td>시제품·서비스 사진 ②</td></tr>
<tr><td>향후
추진계획</td><td colspan="2">〈삭제 후 제출〉
시제품(서비스) 제작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
<table><tr><th>구분</th><th>주요 추진 계획</th><th>예상액</th><th>비고</th></tr><tr><td>'2_.0월</td><td>- 시금형 제작 외주용역비 지급
- 브로슈어 제작 지급</td><td>8,000,000원</td><td></td></tr><tr><td>'2_.0월</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애로사항</td><td colspan="2">〈삭제 후 제출〉
1.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에 참가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2.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 작성</td></tr>
</table>

[제9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기본 정보				※ 협약기간 : '2_.00.00 ~ '2_.00.00
참여자명		기업명		
과제명		사업장 위치	경기도 (　　시)	
사업 추진단계 (중복 가능, ☑ 표시)	□ 시제품 기술개발 단계　□ 시제품 상품화 단계　□ 시제품 사업화 단계 □ 자금확보 및 마케팅활동　□ 기타(　　)			

주요 성과		※ 성과는 '협약개시일 ~ 협약종료일(협약기간 이내)'을 기준으로 작성 ※ 지재권, 기타 실적관련 표 추가 가능			
창업 현황	창업 여부	□ 여　□ 부	현재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R&D 및 시제품 제작	완료여부	□ 여　□ 부	목표 대비 달성도	%	
	최종 R&D 및 시제품 제작 현황 요약	*사업기간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제작한 시제품·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간략한 요약 (미완료시 미완료 사유)*			
주요 성과	매출액 (협약기간 이내)	원	고용	현재	*5* 명
				신규채용 (협약기간 이내)	*3* 명 ** 직원 총 5명 중 협약기간동안 신규채용 3인의 경우*
	투자유치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자금조달 금액 (협약기간 이내)	건,　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협약기간 이내)	구분	출원(등록)일자	출원(등록)번호	비고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
	기타(저작권 등)			

기타 실적 (협약기간 이내)	구분	세부 내용
	인증	*인증명칭 / 인증기관 / 인증일자 등*
	투자유치	*투자기관 / 투자규모/ 투자유치일자 등*
	MOU	*MOU 체결기관 / 체결일자 등*
	판로개척	*국내외 판로확보(계약체결 등) 규모, 거래처 등*
	기타	*M&A, 수상 실적 등 자유롭게 기입*

목표 대비 실적 요약	〈삭제 후 제출〉 1. 사업계획서 상 주요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별 달성여부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내용 작성

세부 추진실적

□ **사업계획 달성 현황**

순번	주요 목표	현 황	달성도
1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테스트 페이지 오픈*	*100%*
2			
3			
⋮	⋮	⋮	⋮

○

-

〈삭제 후 제출〉
1. 협약개시일 이후,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경과 · 실적에 대하여 작성
2 시제품 제작, 마케팅(홈페이지 등), 신규채용을 통한 팀원구성 등 주요 사업화 활동 별로 구분하고, 활동별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3. 사진, 도표 등 사용 가능

□ **사업추진 결과**

○

-

<table>
<tr><td rowspan="5">시제품
사진</td><td colspan="3">〈삭제 후 제출〉
1. 시제품 · 서비스 · 플랫폼 등 창업과제 관련 산출물에 대해 사진, 스크린샷 첨부(3장 이상)
2. 사업화 활동 중 제작된 산출물(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이 있을 경우 첨부</td></tr>
<tr><td colspan="3">시제품(서비스) 사진</td></tr>
<tr><td>사진/스크린샷 ①</td><td>사진/스크린샷 ②</td><td>사진/스크린샷 ③</td></tr>
<tr><td>사진/스크린샷 ④</td><td>사진/스크린샷 ⑤</td><td>사진/스크린샷 ⑥</td></tr>
<tr><td colspan="3">기타 사진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 기타 창업·마케팅 활동 관련)</td></tr>
<tr><td>사진/스크린샷 ①</td><td>사진/스크린샷 ②</td><td>사진/스크린샷 ③</td></tr>
<tr><td>향후
추진계획</td><td colspan="3">〈삭제 후 제출〉
1. 본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사업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td></tr>
</table>

[제10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협약 변경승인 신청서

기업정보	과제명			
	기업명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청 내 용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과제명칭 변경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위와 같이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의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참여자명 : (서명)

첨부 1.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1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선 정 평 가 표

구분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기 창업자
신청자명		기업명	
과제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문제인식 (15)	1-1. 창업과제의 개발 동기/개발/개선 목적	10	
	1-2 창업과제의 목표시장 분석	5	
실현가능성 (25)	2-1. 창업과제의 개발/개선 방안 구체성	15	
	2-2. 창업과제의 차별화 방안	10	
성장전략 (40)	3-1. 창업과제의 성장전략	15	
	3-2.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 - 사업수행의지, 사회적가치실현	15	
	3-3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계획	10	
팀 구성 (20)	4-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10	
	4-2. 팀 현황 및 보유역량	10	
합 계		( ) 점	

평 가 의 견
Tip : 평가점수가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를 기입

20__년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선정평가**를 상기와 같이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__. .

소속 : 평가위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2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추진 중간점검표

연 번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신청자명		기업명	
과제명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유무
1. 사업계획 이행	○ 내부 인력, 기자재의 투입 또는 외부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방법이 적정한가?	
	○ 시제품제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제작이 가능한가?	
	○ 창업과제의 사업화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상의 최종 목표달성이 가능한가?	

2. 사업추진성과 * 협약기간 내에 한함							
	매출액		백만원	고용현황	신규 고용인원 : 명		
					총 고용인원 : 명		
	R&D지원사업 · 투자현황	투자	건 수 : 건	지재권현황	출원·등록	특허 건 실용신안 건 상표 건 디자인 건	
			총 금액 : 백만원				
			계약일자:				
		R&D 지원 사업	건 수 : 건		인증	건	
			총 금액 : 백만원				
			선정일자:				
사업진행률주1)	%						

3. 점검결과	<점검의견> -

점검일자	20__년 00월 00일	점검자	(서명)
점검장소			(서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제13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추진 완료평가표

평가일 : 20__. . .

참 여 자 명		신청자 구분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기 업 명		평 가 위 원	(서명)
과 제 명			(서명)
			(서명)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1. 사업목표 달성	경기도 내 창업(유지)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창업	☐ 미창업
			☐ 휴업	☐ 폐업
	기술개발 및 제품제작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 대비 완료여부	☐ 완료	☐ 미완료
2. 추진성과	지식재산권 출원/인증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상표 : 건, 디자인 : 건, 인증서 : 건		
	투자 성과	☐ 투자건수 및 금액 (건, 투자금액 : 백만원)		
	융자 성과	☐ 융자건수 및 금액 (건, 융자금액 : 백만원)		
	R&D 지원사업 선정 성과	☐ 선정건수 및 금 액(선정건수 : 건, 지원금액 : 백만원)		
	매출, 고용 성과	☐ 매출 실현 (매출액 : 백만원)	☐ 고용 창출 (총 : 명 / 신규 : 명)	
3.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4. 종합의견				

[제14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협약 변경승인 검토서

검 토 일 : 20__. . .

<table>
<tr><td>참 여 자 명</td><td colspan="2"></td><td>기 업 명</td><td></td></tr>
<tr><td>기 존 과 제 명</td><td colspan="4"></td></tr>
<tr><td>변 경 과 제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검 토 항 목</td><td>검토내용</td><td colspan="3">검토의견</td></tr>
<tr><td>1. 문제인식</td><td colspan="3"></td></tr>
<tr><td>2. 실현가능성</td><td colspan="3"></td></tr>
<tr><td>3. 성장전략</td><td colspan="3"></td></tr>
<tr><td>4. 팀 구성</td><td colspan="3"></td></tr>
<tr><td>검 토 의 견</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검 토 결 과</td><td colspan="2" rowspan="3">□변경승인 □변경미승인</td><td>검 토 자</td><td>(인)</td></tr>
<tr><td>검 토 자</td><td>(인)</td></tr>
<tr><td>검 토 자</td><td>(인)</td></tr>
</table>

[제15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시설물 설치 및 변경 허가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기업</td><td>건물명</td><td>경기바이오센터</td><td>기업명</td><td colspan="3">□ 법인
□ 개인</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연락처</td><td colspan="3">(휴대폰)
(E-Mail)</td></tr>
<tr><td rowspan="2">건축구분
(해당항목 체크)</td><td rowspan="2">□ 시설물설치 □ 기타
□ 구조변경</td><td>사업자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센터용도</td><td colspan="3">□ 본사 □ 연구소 □ 기타</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공사내용</td><td>공사기간(예정)</td><td>20__. . . 부터
20__. . . 까지</td><td rowspan="4">공사업체</td><td>시공업체명</td><td colspan="2"></td></tr>
<tr><td>공사규모(면적)</td><td></td><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총 소요금액</td><td></td><td>업종/태</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설치 및
변경사유</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설치 및
변경항목</td><td colspan="3">(설치)변경 전</td><td colspan="3">(설치)변경 후</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able>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지침에 의거 시설물 설치 및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실 시 해당 공간의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부담 및 시설물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책임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중

첨부 서류	1. 계획서 및 계획도	각 1부
	2. 공사설계 설명서	각 1부
	3. 설치 및 변경 도면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각 1부(신청기업, 공사업체 모두)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16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조기지원종료 신청서

참 여 자 명		기 업 명	
과 제 명			
주 민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연 락 처		e - m a i l	
조기지원종료 충족 여부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서비스 완성 (사업계획대비 %) ☐ 당초협약기간 : 20__. . . ~ 20__. . .		
조기지원종료 희망일자	☐ 조기지원종료 희망일자 : 20__. . .		
협약종료 이후 의무사항	최종평가 참석 의무	*확약합니다*	*자필로 덧대어 작성*
조기지원종료 사 유			

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인하여 조기지원종료 신청서를 제출하며, 협약종료일까지 프로그램 참여 및 보고의무(매출, 고용창출 성과 등)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년 월 일

참여자명: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7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

참 여 자 명		기 업 명	
주 민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연 락 처		e - m a i l	
과 제 명			
포 기 사 유			

위 본인은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로 상기 사유로 인하여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__년 월 일

참여자명: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제18호 서식]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지원종료기업 사업추진현황 조사서

본 조사서는 지원종료 이후 그간의 사업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홍보 지원과 향후 사업 운영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졸업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도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명			
휴대폰번호		**E-Mail**	
지원종료 이후 현재 사업영위여부	☐ 사업체운영 중 ☐ 사업체폐업 (폐업일:) (폐업사유:)	**사업영위 시 사업단계**	☐ 제작완료 및 보완단계 ☐ 양산단계 ☐ 판매단계

- 아래 내용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졸업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운영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성별**	남/여
설립년월일		**창업형태**	개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생산품				**업종/업태**		
종업원수 (작성일기준)	☐ 총 ( )명 / ☐ 전년대비 ( )명 (증가/감소)			**최근년도 매출액 (2022년 기준)**	백만원	
기타성과 (2022년 기준)	( )건 ( )백만원			**투자유치 실적 (2022년 기준)**	( )건 ( )백만원	
인증 보유 현황	※유효기간 내 ☐ 이노비즈 인증 (유 / 무) ☐ 메인비즈 인증 (유 / 무) ☐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유 / 무) ☐ 벤처기업 확인서 (유 / 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유 / 무) ☐ 기타 : (내용기재) (유 / 무)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	☐ 특허권 ( )건 ☐ 디자인, 의장등록 ( )건 ☐ 실용신안권 ( )건 ☐ 상표권 ( )건 ☐ 기타 : ( )건	
향후사업 추진계획						
기타 및 애로사항	1. 사업성공사례 또는 사업부진이유 및 애로사항을 기입 2.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기입					

[별표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1항 (창업의 범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창업인프라(공간지원)지원사업 수행중인 자

→ 경과원 공간(입주)지원 사업에서 **입주(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퇴거 예정인 자는 참여 가능**

⑥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별표 2] 기업지원 사업 운영규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제재 및 환수기준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 운영 프로그램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 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 결과물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 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법 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 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 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 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